

감전위험 높은 LED 등기구 등 리콜 조치

LED등기구 6개, 예초기 날 3개 등 12개 제품 리콜명령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조사과 02-509-7250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13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LED등기구, 휴대용예초기날 등의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
- ◎ 조사결과, LED등기구(6개), 전격살충기(1개), 선풍기(1개), 형광등기구(1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3개) 12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명령(리콜조치율 : 3.0%)함

■ 리콜조치된 12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

- ◎ LED등기구 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이 누락 변경(안정기, 퓨즈 등)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구 커버를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충전부 노출로 인한 제품 사용상 감전의 위험성이 있음
 - * 충전부가 신체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될 수 있으므로, 충전부는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해서 열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함
- LED 취침용 등기구 1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외관을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헬로우키티 모양)으로 변경하였으며, 제품의 일부 부품 누락시킴
- ◎ 전격살충기 1개
- ◎ 선풍기 1개 제품은 정격 전압하에 팬(모터)이 회전하지 못하는 경우 온도상승을 지하기 위해 온도 퓨즈가 필요하나, 온도퓨즈를 누락시켜 화재 위험이 있음
- ◎ 형광등기구 1개 제품은 절연내력 부적합 및 비인증 안정기를 사용하여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음
- ◎ 휴대용 예초기날 3개 제품은 내충격성 시험에서 날끝이 떨어지거나 균열되어 사용자가 제품사용시 예초기날 파편으로 인한 신체의 위해 우려가 있음

■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여 주어야 함

- ◎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됨
- ◎ 최근 LED 시장의 확대로 관련 제품의 부적합률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말에 LED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재실시 하여 안전한 LED 제품 유통 유도

* (LED등기구) 50.0%(’11) → 0%(’12) → 53.5%(’13)

*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17.2%(’11) → 17.6%(’12) → 20.7%(’13)

* (조명기구용컨버터(LED용)) 0%(’11) → 4.5%(’12) → 16.8%(’13)



산업부,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와 가스에너지 안전 분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13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 신규과제에 630억원 지원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02-2110-4691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스분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스에너지 안전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13년도 하반기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음

* 하반기 지원규모(630억원) : 중장기과제 282억원, 단기과제 348억원

* 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산업부는 지난 8월 16일 「창조경제시대 ICT기반 에너지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을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전력수요관리를 추진중에 있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ICT기반 스마트 플러그 관련 기술, 정보가전기기 전력절감 기술, 에너지다소비기기(건조기, 조명 등) 효율향상 기술, 산업공정상에서의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는 공정개선 기술 등을 이번 공고과제에 포함 하였으며, '14년도 중장기 R&D과제 기획에도 ICT 관련된 기술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임

* 스마트플러그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가전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 전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단하거나, 전기 사용량을 측정·제어하는 장치

- 또한, 국민생활에서 가스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스안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음('14년초 완료예정)

- 동 계획의 일환으로 가스에너지 분야에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하매설 노후배관'이나 '저장 시설' 등에 대한 예방중심의 가스안전관리 기술과제를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가스에너지 분야의 안전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그리고, 우수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전문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신규로 지원함

- 그간 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주로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플랜트와 시스템구축을 지원해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타 산업보다 낮은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기술을 선별하여 해당기업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를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중소·중견기업이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아울러, 기존 에너지산업에서 성능향상, 비용절감, 상용화시기 단축 등 기존패러다임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에너지혁신형 기술과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유공모형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도 함께 지원하기로 함



신재생에너지가로등 품질기준 미달 조달업체 제재

품질관리 취약업체 17.8%에 달해 ...
규격미달제품 소핑몰 거래 정지

문의 | 조달청 070-4056-8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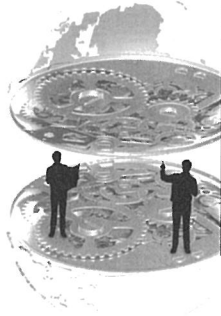
- 조달청(청장 민형중)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 ⊙ 45개 생산업체 중 17.8%인 8개사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했으며,
 - ⊙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가로등 : 태양·비람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축전지에 저장하였다가 가로등의 전원으로 이용하며, 주로 도로·공원 등에서 사용함

- 이번 품질점검에서 적발된 8개 업체 제품은 모두 주요 구성품인 LED 보안등기구의 ‘초기광속’*이 규격에서 미달되었으며,
 - ⊙ 이는 업체가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계약규격을 품질기준치 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에 기인한다.
 - ⊙ 이중 2개 업체 제품은 등기구의 효율도 기준치에 미달, 핵심 부품인 LED 소자 등 원재료의 품질관리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초기광속 : 등기구를 100시간 Aging 한 후 측정된 밝기로, 계약규격 상 적합기준은 정격광속(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의 95% 이상임

-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국가 전력난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 ⊙ “앞으로 친환경제품이나 녹색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하여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뽑는다

5개 부처 손잡고 10월부터 일제 단속 실시
계도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 감면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2-2110-5467)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부처가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일제 단속에 나선다.
 - 합동단속 참여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 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을 해왔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산림 등의 분야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을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산업현장 및 각종 건축시설물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또는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어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 ◎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 정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 ◎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 ◎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5년간 자격대여로 인한 행정처분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205	162	193	134	72
자격정지	168	144	172	111	51
자격취소	37	18	21	23	21

(단위: 건)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국민체감형 5대 과제와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대책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059

■ 산업통상자원부는 9.25(수)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 '12.8월, 총리주재 "에너지시설 안전대책"에서 에너지안전을 다루는 독립된 전문위원회를 신설키로 하고, 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신설('13.4월)

- ◎ 금번 대책은 최근 원전정지 이후, 원전·전력·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 ◎ 그동안 산업발전을 위한 '先 수급·後 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 ◎ 에너지원별 안전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유해화학 사고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됨

■ 특히, 산업부는 동 대책 중에서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말까지 우선 추진할 계획임

- ◎ 체감형 대책은 최근 생활 주변의 LPG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스사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13년에 추진되는 국민 체감형 5대 대책〉

- ① 가스 공급자 의무로만 관리되던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확대
 - * 지난 9.11일 평택 이발소 LP가스 폭발사고는 이발소가 법정 검사시설에서 제외되어 시공시 부적합 시설을 설치,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
- ② LPG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 신설
 - * LPG충전소내 금연규정이 미비(8M내 화기 취급시 사업주만 처벌)하여 일부 운전자들이 충전소 주변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
- ③ LPG용기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서민용 LPG 용기수급 불안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
 - * (현) 제조 후 26년 폐기 → (개선) 제조방법이 개선된 '89년 이후 생산용기 적용배제
 - ** 검사기준 강화(누출검사 및 도장검사 추가), 불법유통 단속, 용기 이력제 도입
- ④ 국내생산 부탄캔의 '안전성 실증실험' 을 통해 안전한 부탄캔 사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안전장치부착 의무화 검토
 - * (부탄캔 사고) 최근 5년간 가스 사고(739건) 중 부탄가스캔 사고는 133건 발생
- ⑤ 이사시 도시가스 배관 막음조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신규·재건축 주택내 「도시가스 상지록」설치 활성화
 - * (현) 이사 시 배관 막음조치, 가스 연결로 3만원의 추가비용 발생(퓨즈 콕, 호스 설치)

■ 금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원별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 ◎ (원전시설)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점검강화와 선제적 설비 교체를 추진('13~'16, 1.1조원)하고, 원전업계의 유착관계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 ◎ (전력설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점검·전기화재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술 R&D를 추진
- ◎ (가스시설) 도심지내 신규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에 안전성평가후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운영 고압배관은 내부 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

- (석유시설) 석유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와 소방설비의 작동점검 기준 마련
- (광산시설) 광산 심부화, 대형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낙반방지시설과 가스측정기구 등 안전시설 확충
- ② 단기·사고대응 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
 - 산업부-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 에너지 안전 계획-시행-평가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안전관리 시스템〉



- 에너지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그 성과의 비교·평가
- ③ 기업 활동 촉진, 국민행복 안전서비스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제도 확충
 - 중소·영세기업 현장 활동을 제약하는 안전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미사용 고압가스 제품의 재검사 주기완화,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LPG 용기관리, 자가사용·소량수입 제품의 해외공장등록제도 면제 추진 등
 - 국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엄정히 관리하되, 국민불편 해소와 시설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국민행복 서비스를 확대
 - 국가주도에서 민간 전문성 활용과 참여 등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 * 민간전문가와 일반국민,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가스 상세기준(Code) 제정, 기술변경이나 안전관리를 위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안전특례 고시제도 활성화
- ④ 안전기술 개발, 안전서비스(인증·진단·컨설팅) 수출 지원
 - 그간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에서 노후배관 비파괴 검사, 독성가스 관리기술 등 가스 안전기술 고도화 R&D 추진
 - * (日) 경제산업성은 가스안전고도화사업에 '00~'06년 중 약 940억원 지원
 - (美) 오마바 정부는 가스배관 안전향상을 위해 연 1.1억달러 지원
 -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협업을 통해 중동, 아시아국가에 안전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안전진단, 인증, 컨설팅
 - * 대상국에 한국의 안전제도·인프라 전수를 통해 우리기업의 설비수출 지원 병행
- ⑤ 부처 협업을 통해 산단 안전, 화학사고 대응,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 정부·지자체·기업 등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가스, 전력 등 에너지시설이 집적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
 - * 노후산단 정밀진단 추진, 노후시설 개보수, 환경부, 방재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6곳) 설치·운영
 - 관계부처 합동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13.7.5)에 따라 기업·정부·국민이 상호 협력하여 맞춤형 화학사고 예방
 - 국정원, 미래부 등과 협업을 통해 원전, 발전소 등 에너지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
- 산업부는 앞으로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 또한, 에너지 공기업내 CEO에서 현장까지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